

환경관리규칙

2023. 07.

대주코레스 주식회사

환경 관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주코레스 주식회사 완주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서 쾌적한 생활공간 보전과 회사의 재산피해를 방지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과 공장을 출입하는 방문객, 협력업체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타법령등과의 관계) 공장내의 환경관리는 환경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 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한다.
4.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지정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 폐산, 폐알칼리등 주변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

6.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5조(환경관리 조직) 공장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조직을 편성 운영한다.

제6조(환경직무) ① 경영책임자는 공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② 환경관리책임자는 사업장내 환경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집행등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환경관리자는 경영책임자 및 환경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환경 현장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관리에 대한 대관청 업무

2. 수질,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시정권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수질,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사고의 원인조사 및 예방책 강구, 보고

8.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9.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법적 기준치이내 사업장관리에 관한사항

④ 환경관리감독자(생산부서 팀장)는 당해부서의 시설·장비, 인원 및 운전에 관한 당해부서 환경관리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내 당해시설 환경오염 예방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질,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배출, 분류 및 적정보관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반입, 보관, 사용등 적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환경관리자의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건의 및 지도 · 조언의 조치) 환경관리자가 환경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경영 책임자, 환경관리책임자, 환경관리감독자등 건의하거나, 조언한 경우에는 해당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관리위원회) ① 사업장내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 : 환경관리책임자
 2. 위원 : 공장장, 공장 생산 및 기술관련 팀장
 3.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관리부서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 · 의결한다.
1.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2. 환경관리에 필요한 규정의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내 준법 환경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법적 기준치 준용)
 4. 기타 사업장내 환경관리상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의 소집, 주관 및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개최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가부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장 환경 관리

제9조(환경 관리 계획) 환경 관리 부서는 매년 1월 중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계획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① 생산 부서는 배출 시설 가동 시에는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며, 오염 물질 등의 배출이 환경 관계 법령이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 기계 장치 보수 등을 위해 방지 시설을 가동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 관리 부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환경 안전 부서에 통보 없이 임의로 개보 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변경, 신설)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 관리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설계도면
2. 변경할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설계도면
3. 설계 사양 및 투자비
4. 기타 설명 자료

제12조(대기, 수질 관리) ① 환경 관리자는 사업장 내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 관리 감독자는 당해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환경관리자의 시정, 보완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관리) 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반입, 보관 및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관리감독자는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는 유독물 보호구함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비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① 공장내 모든 부서는 각 해당관리부서에서 배출된 폐기물 및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폐기물 보관장에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자는 그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올바로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처리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5조(측정 및 기록유지) ① 환경관리자는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환경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주관부서는 대기 및 수질 배출, 방지시설이 상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이상발견시 즉시 환경안전팀에 통보하고, 환경안전팀의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설점검) 환경관리감독자는 환경관련 시설의 이상배출 유무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부서장은 그 결과를 환경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고장의 발급) 환경관리자는 임의 또는 고의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중대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장 및 행위자에게 시정지시 및 별지 제1호의 경고장을 발부할수 있다.

제4장 사고조사 및 보고

제18조(사고신고 및 조치) ① 모든 직원은 오염물질의 임의방류, 장기방치, 대량방출 등을 목격 하였을 경우 해당 환경관리감독자나 환경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리부서장 또는 환경관리부서는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즉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방제를 위하여 장비나 인력지원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해당 부서장은 타 업무에 최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사고 발생시는 통제본부의 지휘하에 별표 2의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제19조(중대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오염물질의 대량방출이나 장기 배출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중대한 오염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환경관리부서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환경관리 감독자는 사고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의 사고 조사서를 작성하여 환경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부서는 접수된 사고조사서를 근거로 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별지 제3호의 사고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환경관리책임자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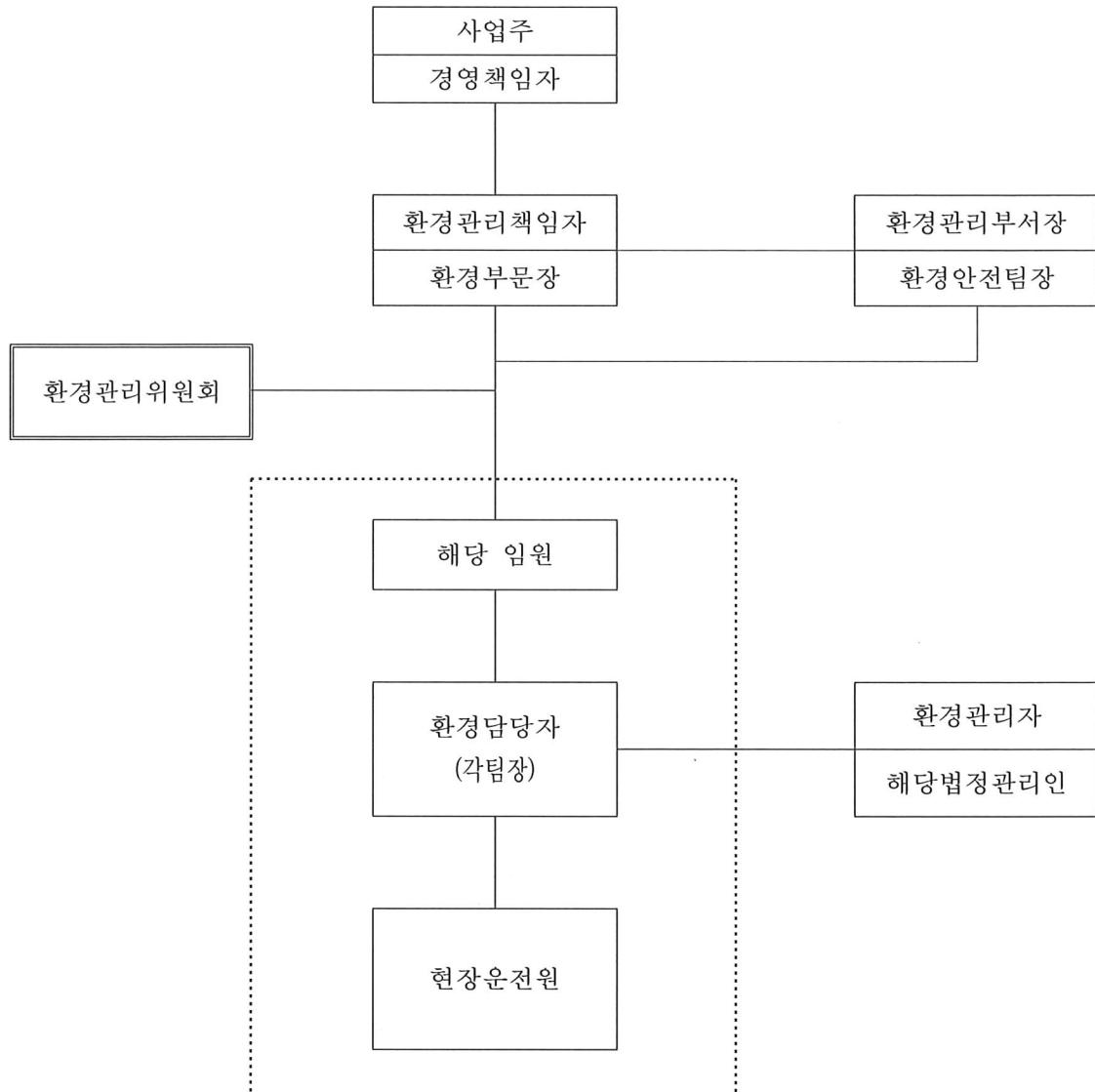
제20조(책임) 사고조사 및 점검결과 다음의 문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관리부서장은 인사담당부서장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의 대량유출사고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문제를 유발시킨 경우
2. 환경관리자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경고장을 1년간 3회 이상 받은 자
4. 사규 및 제반 환경법규를 무시하여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자

제21조(문서의 기록·보존) 이 규칙 제18조의 사고조사서 및 사고조사보고서는 영구히 보존한다.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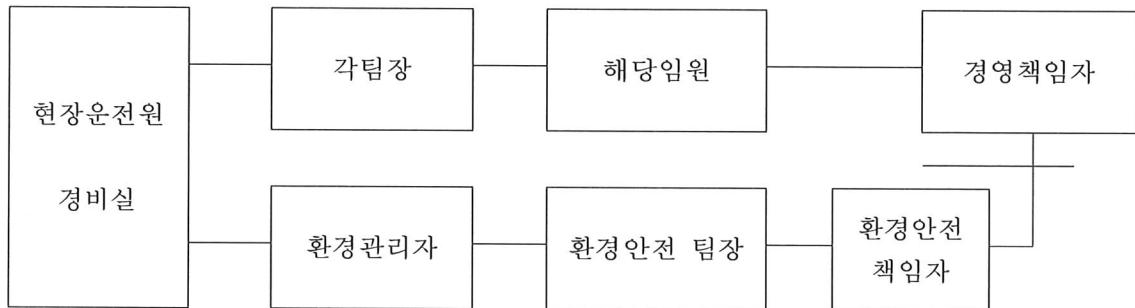
환경 관리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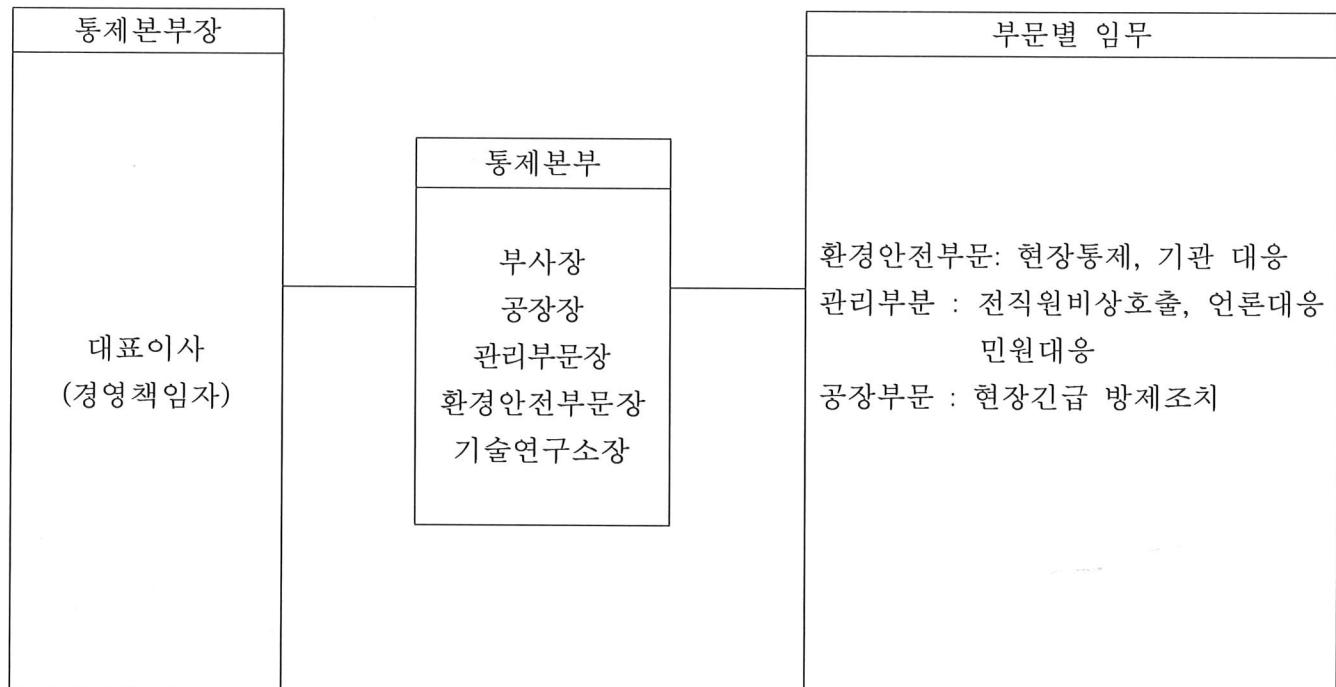
별 표 2

비상연락체계도

1. 내부 연락망



2. 통제 본부



별지 제1호 서식

환경경고장
(원 본)

경고번호	2023 -
일 시	2 0 2 3
경고장소	
위 반 자	소속: (서명)
위반내용	
특기사항	

환경 관리 책임자 ☐

환경경고장
(위반자용)

경고번호	2023 -
일 시	2 0 2 3
경고장소	
위 반 자	소속: (서명)
위반내용	
특기사항	

환경 관리 책임자 ☐

별지 제2호 서식

담당	팀장	임원	부사장	대표이사

중대사고(공정,환경) 조사서	
1. 사고발생일시 : 2023	2. 조사기간 : 2023
3. 장 소 :	
4. 소속 및 작성자 :	
5. 공정사고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폭발 <input type="checkbox"/> 화재 <input type="checkbox"/> 위험물질 누출 (누출물질명:) <input type="checkbox"/> 인적상해 <input type="checkbox"/> 환경시설 부적정 운영 및 임의 배출등	
6. 사고의 상황 개요	
7. 사고 발생원인	
8. 사고피해	
9. 비상조치사항	
10. 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